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제4조(영업의종류 및 시설기준) 및 제6조(영업의 신고 등)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(영업장폐쇄)후 우편물을 등기발송하였으나, 우편물 반송(수취인불명, 폐문부재등)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(송달)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2. 8.

서울특별시 중구청



- 제 목: 건강기능식품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 반송분 공고
- 공고기간: 2022. 8. 31.(수) ~ 2022. 9. 15.(목)
- 근거법규: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제6조, 제32조
- 게시장소: 전국 시·군·구 게시판, 홈페이지
-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

영업신고번호	업 소 명 (업종명)	영업소 소재지	대표자	처분사유	처분내용
2015-0029910	에 이 스 (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)	중구 명동10길 55.지하1층	이*연	영업장폐쇄	직권말소 (2022.7.29.)
2019-0030502	스타일베리 (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)	중구 퇴계로 461.민족통일대통령빌딩 501호	김*대	사업자폐업 (2020.09.11.)	직권말소 (2022.7.29.)

6. 고지사항

위 공시송달(공고) 내용에 의의가 있는 경우,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(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)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- 문의사항: 서울특별시 중구청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신희섭(☎02-3396-5664)